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국민임대 입주자 추가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3.03.10.]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공고문 숙지사항] 및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동부용 고령자복지 국민임대주택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자유롭게 인터넷으로 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 신청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신청→임대주택

※ 청약 신청은 신청접수시작일의 오전 09시부터 접수마감일의 오후 17시까지로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청약시스템은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LH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하여 사전에 미리 청약 절차를 연습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3.03.10(금)**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본 단지는 국민임대, 영구임대의 혼합단지입니다. 동일자로 공급하는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에 대해 중복신청이 불가하며(**국민, 영구 중 택1**)**중복 신청시 모두 무효 처리 됩니다.**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명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국민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주택관리번호	2023000092

- 신청 시 청약은행과 납입인정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 청약신청자는 공급유형별, 순위별 청약일정을 확인하시어 해당 일자에 반드시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 (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중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명의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합니다.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 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 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 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 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70%	1인가구	90%	(3,018,495)원이하	
	2인가구	80%	(4,004,300)원이하	
	3인가구		(4,702,739)원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4인가구		(5,335,439)원이하	
	5인가구		(5,628,344)원이하	
	6인가구		(6,091,147)원이하	
	7인가구		(6,553,950)원이하	
	8인가구		(7,016,753)원이하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자산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6,100)백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 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역,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종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총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청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자동차	

금융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합계금액에서 차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 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4. 공급일정

■ 공급일정 *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접수	현장방문 신청장소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인터넷신청자) 서류제출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온라인) '23.03.22(수) 09:00 ~ 03.24(금) 17:00	LH 영동부용 고령자복지 주택 관리사무소 '23.03.22(수) 10:00~16:00, (12:00~13:00제외)	'23.03.29(수) 17:00 이후	'23.03.30(목) ~ 04.07(금) (제출방법) 등기우편 *23.04.07(금) 우편소 인분까지 유효함 (일반우편 접수 불가)	'23.06.23(금) 17:00 이후	(전자계약) '23.06.28(수) 09:00 ~ 06.30(금) 17:00 (현장계약) '23.06.28(수) 10:00~16:00 (12:00~13:00제외)

* 인터넷 신청접수 및 당첨자발표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현장 신청접수, 현장계약 장소는 **충북 영동군 영동읍 학산영동로 1190-12 LH 영동부용고령자복지주택 관리사무소**입니다.(지정된 일자를 제외하고는 방문이 불가능합니다.)

* 서류제출 등기우편 접수처 :

우) 28616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52번길 40(성화동 936),

LH 충북지사 주거복지사업1부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담당자 앞

* 금회 모집은 인터넷 청약자들의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받으며, 공고문 상의 **6. 선정기준** 배점기준과 관련된 서류를

미제출시에는 별도로 추가제출 안내를 드리지 않으니 꼭 **7. 신청서류를 확인하시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접수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배점기준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별도 서류제출 요청 없이 배점 삭제되오니, 추가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배점기준 증빙서류를 동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량이 많을 경우 제출확인이 늦어질 수 있으니, 접수고객님은 **등기번호**를 통해 우체국홈페이지- 국내우편(등기) 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1588-1300)에서 배송조회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 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①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로그인 → 임대주택 청약신청 클릭

③ 인터넷신청



■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 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일정을 확인(4. 공급일정 참조)하시기 바라며, 인터넷신청 가능시간은 해당 신청접수시작일의 오전 09시부터 접수마감일 오후 17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하신 당일 마감 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해당 신청일이 지난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청약은행, 청약납입횟수, 신청순위, 배점기록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어 탈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주택] 주택명 : 영동부용 국민임대 입주자모집 , 관리번호 : 2023000092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 발급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거주지역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시 공고일기준 해당단지가 있는 영동군에 거주시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상 영동군에 거주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 인터넷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주택단지별 인터넷신청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편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대상자 조회(임대주택)」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께서는 발표내용에 우리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지정 장소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모바일 신청방법

■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①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IOS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앱다운
 -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앱다운

②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공동인증서 설치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

-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가 설치되어있거나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센터(www.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연습하기 → 공동인증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모바일 신청(모든 화면이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함)



■ 유의사항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 확인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후 계약내역 조회, 잔금납부이후에는 납부내역 조회등 모든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 환경에서 청약을 하시면 데이터 요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 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일정을 확인(4. 공급일정 참조)하시기 바라며, 인터넷신청 가능시간은 해당 신청접수시작일의 오전 09시부터 접수마감일의 오후 17시까지이므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청약은행, 청약납입횟수,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어 탈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주택] 주택명 :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모집, 관리번호 : 2023000092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 발급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거주지역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시 공고일 기준 해당단지가 있는 영동군에 거주시에는 해당주택건설 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상 영동군에 거주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 모바일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주택단지별 인터넷신청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17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꼭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 → 상단『인터넷청약』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서류제출대상자 조회(임대주택)』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고객께서는 발표내용에 우리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지정 장소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공사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현장방문 신청방법

- 현장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모바일) 신청이 어려우신 분
- 현장 신청 일정 : '23.03.22(수) 10:00~16: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현장 신청 장소 : LH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관리사무소(충북 영동군 학산영동로 1190-12)
-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신청서류 참조**)
 - 신청자격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영동군) 최종 전입일,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도로명 주소, 중증장애인 해당여부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6. 선정기준

■ 선정방법

선정순서 : 순위 → 배점 → 추첨

1.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영동군**에 거주하는 자
-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육천군, 금산군, 무주군, 김천시, 상주시**에 거주하는 자
-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거주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2. 위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3.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 배점기준

배점항목	배점기준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 (영동군에 계속 거주한 기간)	가. 1년 이상 3년 미만 : 1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5년 이상 : 3점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6회 이상 12회 이하 : 1점 / 나. 13회 이상 24회 이하 : 2점 다. 25회 이상 36회 이하 : 3점 / 라. 37회 이상 48회 이하 : 4점 마. 49회 이상 60회 이하 : 5점 / 바. 61회 이상 : 6점
③ 미성년자녀수(태아 및 배우자의 전혼자녀 포함) * 만19세미만(2004.03.11 이후 출생자녀)	가. 2자녀 : 2점 / 나. 3자녀 이상 : 3점
④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가. 신혼부부 (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3점 나.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3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하거나 '혼인한 배우자가 신청 시 기재한 배우자'와 불일치 시 계약 해제 가능
⑤ 부모·자녀간 육아 지원세대 (동일단지에 한함)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미성년자녀(임신중이거나 입양한자, 전혼자녀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세대 및 부모세대가 신청자인 경우 : 각 3점 ※ 배우자의 부모 포함 ※ 부모(자녀)가 기거주중인 국민임대단지로 자녀(부모)가 이전을 원하는 경우, 부모세대 자녀세대가 별개 세대로 한 단지를 각각 신청하는 경우, 한단지 내에서 부모 자녀가 같이 거주하다 이중 한세대가 동일 단지를 신청하고 입주 시 세대 분리하는 경우 포함 ※ 가산점 부여는 신청한 2세대가 모두 당첨 시에만 부여하며 한세대라도

	당첨이 되지 않는 경우는 가산점 미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카목에 해당하는 자※ : 3점
	<p>※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구원 포함)</p> <p>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p> <p>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p> <p>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p> <p>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1인 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p> <p>사.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p> <p>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고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인가구는 90%, 2인가구는 80%)이하이며 영구 임대주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p> <p>자.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p> <p>카.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다) : 3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 (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 3점
⑦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p>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p> <p>*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추가입주자 모집공고일</p> <p>*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갱신계약은 제외)</p> <p>*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국민임대 신청시 명의변경 대상 임대주택의 최초계약일이 감점 산정기준일(예를 들면 '18.5.1일 국민임대 최초계약 후 입주, '19.3.1일 명의변경, '19.4.1일 국민임대 재신청시 양도인 양수인 모두 1년 이내이므로 -5점, 만약 '19.5.3일 신청한다면 1년 초과하였으므로 -3점)</p>
	<p>※ 단,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감점 적용을 배제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이용하거나 청약 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미성년자녀수(재혼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 포함)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전원

* 세대구성원의 태아 포함

②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단,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7. 신청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3.03.10.)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기본서류

구비서류	비 고	발급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신청자 작성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신청자 작성
예비입주자 증복선정 불가사항확인서	• (제출대상) 전체 • (동의방법)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신청자 작성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지 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 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p>※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추가 제출)</p> <p>※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p>	행정 복지 센터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p><아래 해당자만 제출></p> <p>※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동군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영동군에서의 거주 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신청자와 동일세대인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p>※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p>※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임신진단서 /입양관계증명서	<p><아래 해당자만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배점의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에서 태아를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입양관계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혼인관계서류	<p><신혼부부 배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전부)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 예비신혼부부용 신청확인서 및 세대구성확인서(공사양식),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 <p><부모·자녀간 육아지원 신혼부부세대 배점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인기간 7년 이내임을 증명하는 혼인관계증명서 	행정 복지 센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초과 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복지 센터,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관할지사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기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 밖에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해당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대상(해당)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 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자 증명서	지방보훈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 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자목 및 카 목에 해당하는 자 목에 해당하는 자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부양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사회보장급여통지서에 첨부된 "소득인정액 산정결과서"(수급자 신청 후 사회보장급여 통지서를 수령하는데 시간이 통상 2달이 소요되므로 미리 발급신청 요망)	행정복지센터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임을 입증하는 서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증빙서류	관련기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같은 법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	건강보험공단 /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다)	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 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인연금대상자 확인서(차상위 초과부가급여 제외),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중위소득 50%이하자로서 신청후 발급에 60일 소요되므로 미리 확인 요망)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 중 청약저축가입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1면 사본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p>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p>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p>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동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p>

8.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발표 [2023.06.23(금) 17: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공사 청약센터](#) (<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주소 및 연락처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 차계약 기회 및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설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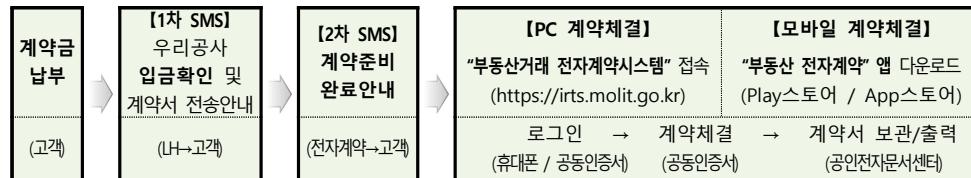
■ 계약안내

- 전자 계약 [계약기간 : 2023.06.28(수) 09:00 ~ 06.30(금) 17: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절차】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합니다.

※ 「1차 SMS」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 ~ 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안내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1차 SMS」는 청약신청 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PC 계약체결 또는 모바일 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합니다.

- 현장 계약 [계약기간 : 2023.06.28(수) 10:00 ~ 16: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장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학산영동로 1190-12 LH 영동부용 고령자복지주택 관리사무소)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대하여 현장계약이 가능합니다.

공통서류(본인 + 대리인 계약 시 모두 지참)	대리인 계약 시 추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훌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 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원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 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9.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여야 합니다. 																		
임대대상 및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비율</th> <th colspan="2">할증비율</th> </tr> <tr> <th>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th> <th>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th> </tr> </thead> <tbody> <tr> <td>10%이하</td> <td>100%</td> <td>110%</td> </tr> <tr> <td>10%초과 30%이하</td> <td>110%</td> <td>120%</td> </tr> <tr> <td>30%초과 50%이하</td> <td>120%</td> <td>140%</td> </tr> <tr> <td>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td> <td></td> <td>할증비율 140%</td> </tr> </tbody> </table>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10%이하	100%	110%	10%초과 30%이하	110%	120%	30%초과 50%이하	120%	140%	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		할증비율 140%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10%이하	100%	110%																	
10%초과 30%이하	110%	120%																	
30%초과 50%이하	120%	140%																	
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		할증비율 140%																	
		* 퇴거사유이나,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는 경우의 할증비율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당첨자·예비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 및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청자격, 소득,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공급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합니다.
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 발표하며,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표일로부터 30일 동안만 게시 또는 안내하므로 해당기간 안에 확인하시 바랍니다.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 발표일 30일 이후에는 "LH청약센터의 고객서비스-예비입주자순위"서비스를 통해 개별조회 확인이 가능하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세대인 경우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주택 혜택발생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공급신청서 작성 시 장애인 세대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입주 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입주일 등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월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월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본 단지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로서 건물의 뼈대는 철근콘크리트로 구성되어 있고,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칸막이로 시공되어 세대간 방음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p>■ 단지 외부여건</p> <p>지구 및 단지 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경 2km 내에 영동역, 영동시외버스터미널이 있으며 4번 국도, 19번 국도가 인접해 있습니다. 기존 구도심과 가까워 영동군청, 영동병원, 행정복지센터, 은행, 경찰서, 문화체육센터, 군민운동장, 지방법원 등 생활 편의 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단지 북측 직선 약 500m 이내 거리에 영동천 이수 공원이 있습니다. 반경 1km 이내에 부용초등학교, 영신중학교, 영동산업과학고등학교, 영동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하나로마트, 재래시장, 대형마트 등이 1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지 북동쪽으로 남성대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위치해 있습니다.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재협의 내용 포함)] 및 인허가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에 조정될 수 있으니,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의 책임이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 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공공시설,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지구 내외의 건설사업 등으로 인해 입주 후 소음 및 분진 등에 따른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쪽으로 19번 국도가 지나가므로 자동차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분양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지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출입구, 공용 시설물, 주민공동시설 등에 인접한 세대는 불빛,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은 「공공주택특별법」 제40조의3 제5항에 따라 LH의 소유이며 사회복지시설은 영동군에 무상임대하여 영동군에서 운영·관리합니다.
- 주민공동시설에는 사회복지시설(목욕탕, 경로휴게실, 다목적홀, 다목적강당, 경로식당) 및 옥외 주민운동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지하PIT 및 2층에 집수정, 환기탑 및 에어컨 실외기 등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분진, 진동, 환기 등이 세대로 영향(전달)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및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전면 발코니는 입면분할창이 설치되어 이삿짐차량(사다리차 등)으로 인한 파손이 발생하므로 이용을 금하며, 복도측 또한 차량 접근공간이 없으므로 전세대 승강기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지상 변압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상 주차장 바닥 마감재 특성상 차량 진출입·회전 시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상 주차장 진·출입로는 바닥 결로로 인해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주차장, 단지 외 도로와 단지 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대 복리시설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 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상 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 주의 요함)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자전거보관소는 법정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하는 것으로 소음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 위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도로 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 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지면의 단자 및 경사로에 의해 저층 세대의 레벨 및 동 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외관 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세대의 발코니 외측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동별, 층별, 호별 입면의 돌출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승강로 인접 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문,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 할 경우에는 사업 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 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도·조경·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지상 주차장은 지상 1층에 위치하며, 각 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으로 단지 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으며 계획 여건에 따라 주차구획(지상 주차장)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복지시설은 목욕탕, 경로당, 관리사무소 등이 있으며 이에 내부 시설물(비품, 가구 및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관리사무소 및 주민공동시설 등과 인접한 일부 동 저층 세대의 경우 인근 부대시설의 에어컨 실외기로 인해 미관 저해, 소음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화 공급주택의 공용부위, 실내마감재 중 미표기사항, 외부 환경디자인 등 팸플릿에 포함되지 않는 설계내용은 설계방식에 따라 유사한 품질 수준 내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명칭 및 동 번호, 색채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 모집 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열교환실), 펌프실, 저수조실, 전기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소음,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발코니 창호의 개폐 방향은 홍보물에 적용된 사양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계단실에 설치되는 창은 방충망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 공용 홀 창호인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 고정창(일부 프로젝트 창)으로 시공됨을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고 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지상 15층 규모입니다.
- 주차대수는 지상 아파트 62대, 사회복지시설 5대를 포함하여 총 67대입니다.
- 최상층 세대 및 옥상에 접한 세대의 경우 옥상에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동 전면·주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옥외쓰레기수거함 설치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세부식재 · 시설물(놀이시설 및 휴게시설) 시공계획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전 · 후면에 소방 공기안전매트 설치구간에는 교목(키큰나무) 식재가 불가 할 수도 있습니다.
- 단지 내 옥외쓰레기수거함이 위치하고 있어 일부 세대에 쓰레기로 인한 냄새, 별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거 당일 지상주차장 일부가 일시 사용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조경시설(옥외휴게시설 등)이 1층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2층 복도를 통해 접근해야 합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팸플릿 등 각종 홍보인쇄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단지배지도, 이미지 컷, 단지특화도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에 적용된 마감 자재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습니다.

<p>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활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p> <p>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 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 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5.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회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약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장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달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총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p>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p> <p>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p>	지방세정 자료
기타 자산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입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정보 조회결과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사 주거복지사업1부

임대문의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충북 대표전화(콜센터) 1670-0003
당첨자 ARS	1661-7700
인 터 넷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03.10.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사장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임차인]	
	분양권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주주(보유자)]	
	출자금/ 출자지분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출자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임대인]	
	장기카드 대출 (카드론)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차주]	
			원 [차주]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인)
2023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사장 귀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임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민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영동부용지구 국민임대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input type="checkbox"/> (1) 대표신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 [] • 주민등록상주소 : [] • 주민등록번호 : [] • 연락처 : [] 				
<input type="checkbox"/> (2) 대표신청인의 예비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 [] • 주민등록번호 : [] • 연락처 : [] 				
구분	동의	동의내역		
공동 신청	<input type="checkbox"/>	상기 신청인 (1), (2)는 영동부용지구 국민임대주택에 공동으로 신청함		
개인 정보 급·용 정보	<input type="checkbox"/>	상기 (1), (2)는 영동부용지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각각 제출하는 것에 동의함		
혼인 관계	<input type="checkbox"/>	상기 (1), (2)는 영동부용지구 국민임대주택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시,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 계약이 무효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음을 확인함		
2023년 월 일				
(1) 대표신청인 : (인) (2) 예비배우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국민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영동부용지구 국민임대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할 것이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 계약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 입주 시 신청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 상 세대를 분리할 예정인 경우 배우자 비고란의 '분리세대'에 체크하고, 양쪽 세대에 속할 예정인 사람을 모두 기재(각 구성원의 비고란에는 신청인세대에 속할 예정인지 배우자세대에 속할 예정인지 체크)하십시오. 단, 이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신청인 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으면 전용면적 40m² 초과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실 수 없으니 유의하십시오.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예정) 세대주와의 관계	비고
본인 (필수기재)		-	(예시)본인	
배우자 (필수기재)		-	(예시)배우자	신청인과 동일세대 <input type="checkbox"/> 분리세대 <input type="checkbox"/>
(예시)부		-	(예시)부	신청인세대 <input type="checkbox"/> 배우자세대 <input type="checkbox"/>
		-		신청인세대 <input type="checkbox"/> 배우자세대 <input type="checkbox"/>
		-		신청인세대 <input type="checkbox"/> 배우자세대 <input type="checkbox"/>

2023년 월 일

대표신청인 : (인)

예비배우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